

2020 - 3540

()

1.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일대 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.
2.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12월 31일
서울특별시 장

가. 열람기간 :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(2021.01.01. ~ 2021.01.14.)

나.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

-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(☎02-2133-8398)
- 서 초 구 도시관리과 주거개선과(☎02-2155-7348)
- 도시계획과(☎02-2155-6793)

다.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서초구 방배동 758번지 일대	-	증) 81,643.2	81,643.2	-	-

2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
3.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4. 가구 및 확지에 관한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5. 건축물에 관한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6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7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■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특별계획구역 1	방배동 760-1일원	-	증) 43,558.2	44,558.2	
신설	특별계획구역 2	방배동 772-13일원		증) 11,668.8	11,668.8	
신설	특별계획구역 3	송파동 776-3일원	-	증) 11,757.7	11,757.7	

라. 관계도서 : 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(안) 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마. 기타사항

-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‘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’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서울시 홈페이지(<http://www.seoul.go.kr>)→서울소식→공고→도시계획(시행)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)
-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(☎ 02-2133-839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